



제43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항공안전기술원의 차입금 근거 신설 등〉
■ 한준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517호)

2026. 2.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오 세 일

목 차

□ 한준호의원 대표발의(2214517)	1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기술원의 사업범위 추가(안 제6조)	3
2. 차입금 근거 신설(안 제12조)	9

□ 한준호의원 대표발의(2214517)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한준호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5. 11. 24.
3. 회 부 일 : 2025. 11.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안전기술원은 항공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개발, 정책연구, 시험, 인증,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항공안전 확보와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전문기관으로서, 현재 항공기 인증, 안전기술 개발, 시험평가 등 항공안전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지원을 수행하고 있음.

최근 드론,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항공교통 수단의 등장과 항공기술의 급속한 발전, 시장 확대에 따라 항공안전기술원의 역할 또한 확대되고 있으며, 국내외적으로 항공 재난 및 사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항공사고 예방 전문기관으로서의 기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무인항공 분야는 항공안전기술원이 실적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온 핵심사업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고유사업으로 명

시되지 않았음. 이에 항공안전기술원이 수행하고 있는 「항공사업법」 제69조의2에 따른 무인항공 분야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 사업을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명시하여, 기관의 법적 역할 및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유인항공기뿐만 아니라 무인항공기 등 신산업 분야까지 아우르는 안전관리 체계를 제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함.

또한, 현행법상 항공안전기술원은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위한 차입금 등 추가 수입원 확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기관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차입금 조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원 확보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항공안전 활동을 보다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6조 등).

Ⅲ. 검토의견

1. 항공안전기술원의 사업범위 추가(안 제6조)

개정안은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을 항공안전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의 사업범위에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사업) 기술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생략) 2. 「항공안전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108조제1항, 제124조 및 「공항시설법」 제52조에 따른 증명, 승인, 인증 등의 기술연구 및 지원 <u><신설></u> 3. 4. (생략) <u><신설></u> 5. 6. (생략)	제6조(사업) ----- ----- -----. 1. (현행과 같음) 2. ----- ----- 제28조 ----- ----- ----- 2의2. 「항공안전법」 제108조제1항, 제124조, 제129조제5항에 따른 시험비행 등 허가, 안전성인증 및 검사 3. 4. (현행과 같음) 5. 「항공사업법」 제69조의2에 따른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7.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기술원은 국토교통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라 항공안전에 필요한 항공안전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항공사고 예방에 관한 인증·시험·연구·기술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며,¹⁾ 수입과 지출의 차이만큼 출연금으로 보전받는 수지차 보전기관임.

특히 최근 드론 등 무인항공 분야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기술원은 드론 상용화 및 실증도시, 정보포털 운영 등 드론산업 활성화 지원, 기업체 해외진출 지원, 드론비행시험센터·개발시험센터²⁾ 운영 지원 등을 통해 무인항공 분야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고,

「항공안전법」 제129조제5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하는 ‘특별비행 안전기준 검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현행법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1) 「항공안전기술원법」

제6조(사업) 기술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항공안전법」 제23조제9항에 따른 감항성개선지시 등의 명령을 위한 항공기 구조상 결함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및 지원
 2. 「항공안전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108조제1항, 제124조 및 「공항시설법」 제52조에 따른 증명, 승인, 인증 등의 기술연구 및 지원
 3. 항공기 등에 대한 국가공인 비행시험과 국가공인 비행시험 시설의 운영 및 관리
 4. 항공사고 예방기술 개발 및 항공안전 국제표준화 기술연구
 5.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그 밖에 항공안전과 관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2) (비행시험센터) 영월, 보은, 고성, 화성, 인천, 의성 6개소/ (개발시험센터) 고성 1개소

【 기술원의 주요 업무 】

사업명		주요내용	근거법령
항공인증		- 항공기 형식증명 등 인증 -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 경량/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검사 -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 - 감항성개선지시서 기술검토	항공안전법 제26조 공항시설법 제54조 항공보안법 제27조 항공안전기술원법 제6조
항공안전관리지원	항공안전자료분석	- 항공기 고장·결함·기능장애 분석 - 항공안전데이터(항공안전장애 등) 분석 - 항공안전의무보고자료 분석 지원 - 안전위해 요인 사전 발굴 및 개선 지원 - 항공안전투자공시 검증 전문기관 - 통합항공안전데이터 수집분석 시스템 운영 - 항공교통데이터센터 구축	항공안전법 제135조 항공안전기술원법 제6조 항공안전법 제133조2
	국제표준연구	- ICAO 등의 국제표준 연구·분석 - 국내 법령 등의 국제기준 적용 지원 - 국제민간항공기구 및 국제기구에서 요구하는 자료 등의 연구·분석 및 관리	항공안전법 제135조 항공안전법 제78, 83, 84, 89조
비행시험시설 운영·관리		- 항공기 및 항행안전시설 등의 안전성 인증 및 성능검증 시험 수행	항공안전기술원법 제6조
항공안전 전문인력양성		- 고유업무 수행 성과의 산업계 환류 위한 항공종사자 교육	항공안전기술원법 제6조
무인항공 안전증진		- 무인항공 우수기업 지원 및 육성 - 무인항공 인프라 및 시험시설 구축·운영 - 드론산업 실태조사,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관리 - 드론시험사업구역의 관리 및 창업 활성화 지원 - 드론기업의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지원 및 관리 - 무인항공 안전기술, 운영·관리체계 연구 -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 안전기준 검사	항공사업법 제69조 항공안전법 제135조 드론법 제 21조
항공안전 R&D·정책 연구		- 국가 항공안전 R&D 및 정책연구 수행	항공안전기술원법 제6조

<< 항공안전기술원 주요업무 체계도 >>



※자료 : 항공안전기술원

이에 개정안은 기술원이 수행하고 있는 「항공사업법」 제69조의2에 따른 무인항공 분야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 사업³⁾과 「항공안전법」 제129조제5항에 따른 검사 업무⁴⁾를 기술원의 업무로 현행법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무인항공분야 사업을 수행하는 기술원의 법적지위·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한편, 법정사업화를 통해 예산·조직 등 기술원이 무인항공 안전관리에 대한 사업을 안정적·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무인항공 신산업에 대한 대응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항공사업법」

제69조의2(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 국가는 「항공안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무인항공기의 인증, 정비·수리·개조, 사용 또는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2.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에 대한 현황 및 관련 통계의 조사·연구
3. 무인비행장치 및 무인항공기의 안전기술, 운영·관리체계 등에 대한 연구 및 개발
4. 무인비행장치 및 무인항공기의 조종, 성능평가·인증, 안전관리, 정비·수리·개조 등 전문 인력의 양성
5. 무인항공 분야의 우수한 기업의 지원 및 육성
6. 무인비행장치 및 무인항공기의 사용 촉진 및 보급
7. 무인비행장치 및 무인항공기의 안전한 운영·관리 등을 위한 인프라 또는 비행시험 시설의 구축·운영
8.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9. 그 밖에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항공안전법」

제129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로서 야간에 비행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 승인 범위 내에서 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일부 자구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신설되는 무인항공 분야 안전증진 및 활성화 사업⁵⁾ 및 검사⁶⁾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과 관련된 업무로서 각 근거 법률에 따라 기술원에 위탁된 업무임.

현행법 제6조제2호는 「항공안전법」에 따른 형식증명(제20조), 제작 증명(제22조), 경량항공기(108조) 및 초경량비행장치(124조) 안전성인증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과 관련된 업무를 기술원이 위탁·지원하는 점을 반영하여⁷⁾ “기술연구 및 지원”이라는 업무의 보조적 특성을

5) 「항공사업법」

제75조(권한의 위임·위탁)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9조의2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 또는 항공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6) 「항공안전법」

제135조(권한의 위임·위탁)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 또는 항공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3. 제129조 제5항후단에 따른 검사에 관한 업무

7) 「항공안전기술원법」

제6조(사업) 기술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2. 「항공안전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108조제1항, 제124조 및 「공항시설법」 제52조에 따른 증명, 승인, 인증 등의 기술연구 및 지원

「항공안전법」

제135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른 증명, 승인 또는 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 또는 항공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4. 제108조에 따른 경량항공기 시험비행 등 허가 및 안전성인증에 관한 업무

5. 제124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시험비행 등 허가 및 안전성인증에 관한 업무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6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탁)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증명 또는 승인을 위한 검사에 관한 업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확보한 비영리법인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한다.<개정 2018. 6. 19., 2020. 12. 10., 2023. 10. 10., 2024. 9. 19.>

1. 법 제20조에 따른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을 위한 검사업무 및 부가형식증명을 위한 검사업무

명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도 이와 유사하게 자구를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나. 국토교통부 의견

현재 수행 중인 무인항공 안전증진 지원 및 특별비행 안전기준 검사를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나, 신설되는 제2의2호를 기존 2호에 통합하는 등 조문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제5호는 관련 법령 간 연관성을 감안하여 자구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2. 법 제21조에 따른 형식증명승인을 위한 검사업무 및 부가형식증명승인을 위한 검사업무

3. 법 제22조에 따른 제작증명을 위한 검사업무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 제5항및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한다.

4의5. 법 제108조에 따른 경량항공기 시험비행 등 허가 및 안전성인증에 관한 업무

4의6. 법 제124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시험비행 등 허가 및 안전성인증에 관한 업무

2. 차입금 근거 신설(안 제12조)

개정안은 항공안전기술원이 차입금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조(재원) 기술원의 설립,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출연금과 수입금으로 조달한다. 1. 2. (생략) <u><신설></u> 3. (생략)	제12조(재원) ----- ----- -----. 1. 2. (현행과 같음) 3. <u>차입금</u> 4. (현행 제3호와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검토의견

현행법에 따라 기술원의 설립,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출연금과 수입금으로 조달하도록 되어 있는데,⁸⁾

8) 제12조(재원) 기술원의 설립,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출연금과 수입금으로 조달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 제6조의 사업수행에 따른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기술원은 국가철도공단, 국립항공박물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 국토교통부 소관 다른 출연기관과 달리 현행법에 차입을 할 수 있는 근거와 재원 중 차입금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차입이 허용되는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⁹⁾

【 개별법에 따른 차입 근거 】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16조(자금의 조달 등) ①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3. 제25조에 따라 차입한 자금 제25조(자금의 차입 등) ① 공단은 제7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관·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하거나 물자를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차입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철도공단법」 제17조(자금의 조달 등) ① 공단은 그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달한다. 3. 차입금(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및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 제18조(자금의 차입 등) ① 공단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및 물자의 도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차입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9) 다른 입법례에서도 차입의 근거를 명확히 두고 있음.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4조(자금의 차입 등) ① 진흥재단은 제48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및 물자의 도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자금의 차입 등) ① 공단은 제11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국제기구·외국 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7조(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43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국제기구,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국립항공박물관법」

제11조(재원) ①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2. 제13조에 따른 차입금

제13조(차입금) 박물관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13조(자금의 조달 등)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달한다.

3. 차입금(외국에서 차입한 자금 및 들여온 물자를 포함한다)

제16조의2(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외국에서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들여올 수 있다.

「국토안전관리원법」

제8조(자금의 조달 등) ① 관리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달한다.

5. 제12조에 따른 차입금(借入金)

제12조(자금의 차입 등) ① 관리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및 물자의 도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차입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에 개정안은 기술원이 차입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사업 지연으로 인한 추가 지출, 사업수입 예측 오차, 일시적 유동성 부족 등 불가피하게 추가 재원확보가 필요한 경우에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차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원의 안정적·지속적 사업 수행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국토교통부 소관 수지차 보전기관(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교통안전공단)¹⁰⁾ 모두 차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수지차 보전기관인 기술원 또한 차입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기술원의 재원에 ‘차입금’을 신설하면서도 차입 근거 규정은 별도로 신설하고 있지 않은데, 재정 건전성 확보 및 무분별한 차입 방지를 위해 다른 유사 입법례와 같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차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함께 신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¹¹⁾

참고로,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르면, 기술원과 시공사의 법적분쟁, 공사중단 등으로 추가 공사비가 발생하여 잔여 공사비 부족분 10억원을 차입하여 자체 조달하였는바, 향후 이와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차입 필요시 개정안에 근거하여 차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10) 국회 예산정책처, 「2025 대한민국 공공기관」

- 국토교통부 소관 수지차보전기관(4개) :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안전기술원

11)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16조의2(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외국에서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들여올 수 있다.

「국토안전관리원법」

제12조(자금의 차입 등) ① 관리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및 물자의 도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차입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2024년 항공안전기술원 수입·지출 】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항 목	예 산 (A)	집 행 (B)	차이 (A-B)	항 목	예 산 (C)	집 행 (D)	차이 (C-D)
1. 사업수입	42,477	42,095	382	1. 사업비	39,808	39,333	475
인증수입	2,566	2,318	248	인증사업비	1,456	1,201	255
항공기인증	903	823	80	항공기인증비	501	407	94
항공보안장비· 항행안전시설	617	409	3	항공보안장비· 항행안전시설	397	242	155
경량/초경량인증	1,000	1,031	△31	경량/초경량인증	542	536	6
특별비행승인	46	54	△8	특별비행승인	15	16	△1
수탁연구수입	39,911	39,777	133	수탁연구비	37,361	37,311	50
R&D연구수입	4,465	2,828	1,637	R&D연구비	2,886	1,530	1,356
정책연구수입	35,446	36,950	△1,504	정책연구비	34,475	35,781	△1,306
				기타사업비	992	821	171
2. 사업외 수입	357	328	29	2. 인건비	8,075	8,075	-
3. 결산잉여금	960	960	-	3. 경상운영비	2,122	2,105	17
4. 정부출연금	5,647	5,647	-	4. 자산취득비	15	15	-
5. 차입금	1,000	1,000	-	5. 예비비	360	-	360
				6. 차입금이자상환	60	7	53
				7. 처분전 결산 잉여금	-	496	△496
총 계	50,441	50,031	410	총 계	50,441	50,031	410

※ 자료 : 항공안전기술원

나. 국토교통부 의견

항공안전기술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차입금 확보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동의함.

문 의 처

02)6788-5580